

# 농림수산부, 돼지오제스키병

## 방역 세부요령 고시

농림수산부는 지난 8월 30일 돼지오제스키병 방역 세부요령을 시달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을 위하여 실시요령을 고시하여 시행해 왔고, 동 질병의 근절을 위하여 공개업수의사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양돈농가나 일선 수의사가 세부실시요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진단키트의 진단요령·유통·관리 등에 대한 세부요령을 시달한다고 밝히고, 관내 공개업수의사 및 양돈농가에 지도·계몽을 강화해 동 질병 근절의 위하여 적극 협조토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수산부가 시달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 세부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돼지오제스키병 방역 기본방침(고시 제 88-8호)

구 분	내 용
검사대상	종돈장, 양돈장의 돼지, 양돈장 입식 돼지 및 기타
검사실시기준	○종돈장 : 매 반기별 1회이상 ○양돈장 신규 입식돼지 : 전두수 ○기타 : 추적조사 등 필요시
검사기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연구소 ○공개업수의사 또는 관리수의사(입식

조치	돼지) ○양성농장 : 이동제한, 출입제한, 소독 등 긴급 방역실시 - 전두수 검사 및 양성축 살처분 - 3개월 간격으로 검사(2회이상 계속 음성일때 근절농장)
수입중돈	○신규 입식돼지는 전두수 검사 및 양성축 신고 ○검역소장은 검역결과를 해당 도지사 에 통보 - 도지사는 3개월간(별도 격리사육, 혈청검사) 실시

2. 간이진단키트 검사방법

구 분	돼지오제스키병 속성 간이진단 키트	라텍스 오제스키 진단키트
시료	혈액, 초유	혈청
검사기간	3시간	6분
시약 유효기간	2개월	12개월
시약 보관조건	냉장보관 5-10℃	냉장보관 2-8℃
제조사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Rhone-Merieux (수입원 : 동원신약)
검사방법	- 굵은 주사바늘로 찔러나 온 피방울을 여과지에 흡착 건조 - 검사 뒷슈의 한천위에 여과지 접촉한후 그위에 증류수를 떨어뜨림 - 실온에서 90분간 감각 - 한천제거 - 세척액으로 3회 반복 세척 - 희석한 효소면역 글로 부린 투입후 실온에서 45분간 감각 - 흡착되지 않는 효소면역 글로부린을 부어버리고 세척액으로 3회 세척 - 용해된 한천용액에 발색 제와 과산화수소수를 넣어 혼합한후 검사 뒷슈 에 부어 굳게 함 - 한천이 굳어진때(5-10) 분후) 양성은 색을 나 타냄	- 채혈  - 카드보드위에 혈청 0.03ml(30μl)을 떨어 뜨림  - 라텍스 1방울을 혈청 위에 떨어뜨리고 막대기로 교반 - 6분간 카드보드를 흔 들어 움직이고 - 응집 반응을 판정

3. 간이진단키트 유통 및 검사

- 간이진단키트 공급
  - 국 산 :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 수입품 : 동원신약
- 동물약품 판매업소에는 진단키트를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 또는 양돈장 관리수의사에게 판매하고, 별

침 대장에 기재

- 진단키트를 구입한 동물병원 개업수의사는 양돈농  
가의 검사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축이 발생시는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돈장 관리수의사가  
관리하는 양돈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양성돈 발생농장에 대하여도 도지사는 즉시 이동  
제한, 출입자 통제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가축위생  
시험소로 하여금 해당농장의 돼지 전두수를 확인  
검사하는 등 오제스키병 방역 실시요령에 의거 신  
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검사확대실시

- 돼지오제스키병의 근절을 위하여 도축장 출하돈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실시
  - 검사계획량 : 36,000두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지소 각 1,  
000두)
  - 기 간 : '89. 9. 15~10. 15(1개월간)
- 검사결과 양성돈 확인시는 출하농장을 확인하여  
전두수를 검사하여야 하며,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조치하여야 함.

5. 진단키트 검사방법 교육

- 기 간 : '89. 9월중
- 실시방법 : ○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본소)는  
관내공개업수의사(희망하는 양돈장  
관리수의사 포함)를 대상으로 진단키  
트(국산 및 수입품) 검사방법에 대하  
여 실기교육 실시
- 기 타 : 세부실시일자 및 교육방법은 추후 시달

6. 가축시장 출하돈에 대한 감사

가축시장 출하돈에 대하여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수  
시로 감사하여 유통시 양성축이 거래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특히 경기도 남양주군 및 용인군 인근 가  
축시장에 대하여는 특별 감사대책을 수립· 실시. **중요**